

2022년도 제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3. 3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2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76건(안전번호 제2022-15266호~1571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15266호(순번 1번)는 웹사이트 '○○○ ○○○ ○○○○○'에서 음악 '♠♠♠ ♠ ♠♠♠ ♠'의 기타 코드 악보를 제공한 사안으로, 법리 및 주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웹사이트의 코드 악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시장 대체가능성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바 이는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관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2-15267호~15268호(순번 2번~3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우리 심의위원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결하고 있으며 기존 사안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2-15269호~15289호(순번 4번~24번)는 ☒☒☒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

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 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4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 ○○○○' 게시 '앱'에 대해 '◇◇◇' 내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1호)
- 회의결과: 법리 및 주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앱의 코드 악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시장 대체가능성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바 이는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권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됨. 따라서 '○○○'에 심의대상 앱의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 내지 8쪽의 카테고리명, 게시자명, 게시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테고리명, 게시물명, 제작사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07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익명으로 공익 신고한 건임. 웹사이트 '◇◇ ◇◇ ◇◇◇◇'(이하 '심의대상 웹사이트'라 함)에서 음악 '♣♣♣ ♣ ♣♣♣ ♣'의 기타 코드 악보를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웹사이트는 기타 연주 목적으로 제작된 코드 악보(이하 '코드 악보'라고 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운영자는 심의대상 웹사이트와 동일한 구조의 앱(이하 '관련 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코드 악보는 심의일 기준 약 2천 개에 이르며, 가요, 팝송, 민요, 동요, 군가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코드 악보의 코드 부분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내용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3요소 중 하나인 화성 부분만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화성만으로 해당 음악저작물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성 역시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일견 동의함.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요소가 합쳐서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각 요소마다 드러나는 특징적인 부분이 결국 해당 음악저작물의 고유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임.
- B 위원: 검토보고서의 결론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법리 구성에 이견이 있음. 코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나 화성만을 이용한 경우 해당 음악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 D 위원: 역시 부결에는 동의함. 다만 현재 존재하는 합법 시장만이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임. 코드 악보의 경우 사업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모델로 등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잠재적 시장에 미칠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따라서 추후 잠재적 시장의 형성 정도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A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포함하여 악보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음악 실무의 입장에서 창작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 및 해외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코드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시장 대체가능성 판단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단정을 내리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법원 판단의 영역이라는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2번~3번 심의대상 게시물 및 민원인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민원인이 재직 중인 회사 '□□□□'에서 제품 판매를 위

해 촬영 또는 제작한 사진을 온라인쇼핑몰 '○○○'에서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강나래 전문위원: 참고로 우리 심의위원회는 타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게시물 사안에 대하여,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존재한다 하여도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관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심의위원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3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

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도구를 통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 '♠♠♠♠'를 제공 중인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5번~24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등을 제공 중인 사안임. 총 28개 게시물임.

(순번 4번 채증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공 중인 사안임. '◇◇◇◇'에서 제공했던 '♣♣♣♣' 더빙판을 제공하고 있고, 1화 전체 분량인 24분을 제공 중임.

(순번 6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출판물 '☆☆☆'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150 포인트에 판매 중임. 일본 출판물로 1화부터 177화까지 용량 1.5G를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2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5번~44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04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SW,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방송 ‘솔로지옥(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8번은 웹하드에서 총 8편을 9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 12. 18. ~ 2022. 1. 8.에 방영한 국내 웹예능이며, 넷플릭스에서 멤버십 유료가입 후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함.
- (만화 ‘원피스(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7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불법번역본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본 1편당 400원, 단행본 1권당 3,000원으로 유료 결제 후 보기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25번~44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44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5266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15267호~15268호(순번 2번~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15269호~15289호(순번 4번~2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15290호~15714호(순번 25번~44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호(순번 1번)의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를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